

〈논문〉

국제이주여성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崔 俸 京^{***}

요 약

본 논문은 위장결혼 및 이중국적 문제 등을 포함하여 국제이주여성의 혼인이 해소된 경우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국제사법적 관점과 실질사법적 관점에서 개략적으로 고찰하였다.

국제결혼(및 이혼)의 증가는 이질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배우자들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이어졌다. 다양한 문화가 한국에서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복합문화로 태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차치하더라도 국제이주여성은 이미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다.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의견이나 신념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하라는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오늘날과 같은 ‘한국사회의 다문화성’에 비추어 볼 때 세계인권선언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인권선언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언이 형식적인 紙上의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속의 실천이 되도록 소통과 교감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에 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고 또 수행되고 있다. 그 연구들 중 상당 부분은 특히 이주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족(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의 강화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의식의 개선 및 한국의 관련 제도의 정비 내지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법정정책 관점에서 국제이주여성에 관한 보호는 최근 많이 개선되었으나 제도에 올랐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아 보인다.

본 논문은 국제이주여성을 둘러싼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판결의 현주소도 가감 없이 소개하여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다문화가족, 국제이주여성, 국제결혼, 국제이혼, 국제이혼사유

* 본고는 2009년 12월 5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젠더법학회 공동으로 개최된 학술대회[젠더관점에서 본 이혼의 현실과 법리]에서 발표한 논문을 다소 가감한 것이다. 연구와 발표의 기회를 주신 윤진수 법학연구소장님과 양현아 젠더법학회장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 준 김재련 변호사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0학년도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부교수.

I. 서

인류는 지구상에 족적을 남긴 이래 끊임없이 이동해 왔다. 더 나은 살 곳을 위해 개척을 멈추지 않았다. 인류의 이동은 문명의 접촉을 낳았고 이로서 다른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글로벌 시대’, ‘이주의 시대’, ‘지구촌’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타문화에 대한 배려와 존중, 나아가 문화의 공존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의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생각된다.

한국도 오랜 이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선조들의 이민과 아메리칸 드림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옛날이야기처럼 뇌리에 남아 있다.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때론 혼인의 형태로 때론 노동의 목적으로 이주해온 이들 역시 이미 오랜 이주 역사를 뒤로 하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있다.

이 글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의 이야기 중 국제이주여성의 법적 쟁점을 끄집어내 주로 다문화가족의 현실과 이혼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우리는 예로부터 ‘우리’ 의식이 강했다. 그들이 과연 「우리」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는 우리와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융합되고 발현되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일부이기도 하다.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원의 실질적 효과가 그들과 우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이 글이 국제결혼으로 이주해 온 여성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해본다.

이하에서는 먼저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 및 국제이혼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의 이주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II.), 다문화가정의 법률 분쟁의 일단면을 소개한다(III.). 그 후 국제이혼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결정되는 과정을 간략히 짚어본다(IV.). 나아가 국제결혼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V.), 국제이혼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크게 친자관계와 재산적 관계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VI.). 말미에는 이 글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간략한 소회를 덧붙이고자 한다(VII.).

본고에서는 그 밖에 국제이주여성과 관련된 제한 외국인처우개선행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및 관련 조약들에 관한 개별적 상론은 원칙적으로

논의로 하였다. 국제결혼 및 이혼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엽적으로 다루었을 뿐이다. 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II. 국제이주여성의 어제와 오늘

1. 국제결혼과 국제이혼의 실태

이제는 주위에서 「다문화가족(multikulturelle Familie)」¹⁾이란 말이 더 이상 생소하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국제결혼의 예를 많이 본다. 이에 비례하여 국제이혼의 예도 늘어나고,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함은 당연하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분쟁의 실재를 파악하고 그 법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른바 「실태조사」가 필수적이다. 「실태조사」는 이론연구, 판례연구와 함께 법학이 정립해야할 세 가지 분야를 형성한다.²⁾ 후 2자에 앞서 「실태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이상적인 연구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현상’이 변화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현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일용 타당하다.

통계청에서 작년도 발표한 「인구동태통계연보」를 보면 1992년부터 국제결혼에 관한 실측자료들이 존재한다. 당시 국제결혼은 총 결혼건수의 1.4%에 불과했다(419774건 중 5534건). 그로부터 약 17년이 경과한 오늘날 그간 급속도로 변화한 한국사회에 걸맞게 관련통계도 급변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예상하다시피 또는 예상을 뒤엎고 국제결혼의 건수는 급성장을 거듭하여 2005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13.47%, 총 314,304건 중 42,356건). 그 이후 국제결혼은 숫자상으로는 감소중이다(2006년 38,759건, 2007년 37,560건, 2008년 36,204건).

먼저 2008년의 자료를 살펴보자. 2009년의 통계는 내년에 집계될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2008년의 통계가 가장 최근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2007년의 통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³⁾

2008년 국제결혼은 36,204건으로 총 혼인건수(327,715건) 중 11%에 해당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및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2) 김중환, “한국 민법학 30년의 회고”, 서울대 법학, 제19권 제1호, 1978.8, 76면 이하.

3) 2005년과 2006년의 통계는 각주 5 참조.

이는 2007년 대비 약 3.6% 감소한 것이다. 국제이혼은 11,255건으로 총 이혼건수의 9.7%를 차지하였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결혼은 28,163건으로 2007년 대비 1.4% 감소한 반면,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이혼은 7,962건으로 전년(2007년)보다 39.5% 증가하였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결혼은 8,041건으로 2007년 대비 10.4% 감소한 반면,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이혼은 3,293건으로 2007년 대비 11.1% 증가하였다.

요컨대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전체 대비 100쌍 중 11쌍이, 국제이혼은 전체 대비 약 10쌍이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결혼은 감소하는 반면, 국제이혼은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전년 대비 이혼율 39.5% 증가율은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한다.⁴⁾ 취업이주의 문호가 넓어진 것이 그 주된 원인일 것으로 추측된다.⁵⁾

-
- 4) 나아가 2008년 이혼한 한국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평균 동거기간은 2.7년에 불과하며, 동거기간이 5년 미만인 부부가 90.2%에 달하였다. 또한 한국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이혼의 경우 자녀가 없는 부부가 90.1%이다. 이는 일용 자녀가 없을 경우 이혼결심을 하기가 용이함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이 이혼할 경우에도 자녀가 없는 부부가 79.4%에 달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적 장벽이 존재하는 이국에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 때 자녀가 없다면 새 출발을 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법하다. 예외적으로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한 후 이혼을 청구하고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공모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조작하여 한국에 계속 체류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법원에 제기된 이혼건수 중 상당수가 이에 해당하나, 앞서 본 통계자료상의 전체 국제결혼 대비 이혼율에 비추어 볼 때 일단 예외적이라고 말하고 싶다.
- 5) 실제 가정법원에 계류 중인 이혼사건 중 상당수가 국제이혼사건인데, 한국적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경우가 적지 않다.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한국적 배우자의 신원보증의 필요성을 기화로 한 한국적 배우자의 일탈행위가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다른 한편 위장결혼으로 입국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적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이 인정될 경우 이주여성의 체류자격 F-2는 계속될 수 있다. 참고로 한국적 배우자와 결혼하여 한국에 F-2 사증으로 입국할 경우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참조). 이와 같이 「취업」이 해외여성의 한국이주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임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2005년 혼인, 이혼통계」(2006. 3. 30 발표)에 따르면 국제결혼이 총 결혼건수의 13.6%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 혼인통계결과」(2007. 3. 발표)에서는 11.9%로 하락하였는바, 그 원인이 법무부가 시행하는 「방문취업제」로 인해 국내취업과 입국이 용이해진 중국교포와의 혼인이 줄어든 데에 있다고 한다. 국제결혼 가정의 52.9%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계층인 점을 감안하여 2005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F-2비자소지자에게 자유로운 취업 활동을 허용한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소라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 신분보장을 위한 법·제도 검토(지정토론요지)”, **저스티스**, 96호(2007), 45면). 참고로 앞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을 보면 중국, 베트남 여자가 외국인 처의 81.9%를 차지하는데,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총 30.2천 건이며, 그 중

위와 같은 국제결혼의 추세는 그리 오래된 현상이 아니다. 1990년대 초반 하더라도 국제결혼은 전체 대비 1% 정도에 불과했고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이 주였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부터 국제결혼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으며 당시 농림업, 어업 등 제1차 산업 종사남성 중 41%가 국제결혼을 했다.⁶⁾ 오늘날 한국에서의 국제결혼은 훨씬 일상화, 보편화되었고 농어촌, 도시 등 지역 구별도 없어지고 있다. 요컨대 국제결혼은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 버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주가정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법적 지원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만한 사회, 문화적 통합까지는 요원해 보이며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폭넓고 효율적인 대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일본과 독일의 이주정책

그런데 후술하는 여러 분쟁의 양상은 이미 이웃나라 일본과 독일에서도 부각된 바가 있었다. 때론 오늘날 우리의 이주여성문제가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이하에는 간략하나마 일본과 독일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⁷⁾

1) 먼저 1980년대 이래 이주의 여성화현상(feminization of migration)은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다. 물론 이주의 지역적, 국가적 특성에 따라 다양성을 보여준다. 이주의 여성화현상은 서구 유럽에서는 ‘가족의 재결합’의 기치 하에 이루어졌는데 반해 아시아에서의 이주여성은 독자적인 이주인 경우가 많았다. 일본에서도 이들은 주로 가사 노동, 유흥산업, 계약근로자로 일했고 때로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해 오기도 하였다.

중국 14.6천 건(48.4%), 베트남 10.1천 건(33.5%), 일본 1.5천 건(4.9%) 순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여자와의 혼인은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높은 증가율(74.0%)을 보였고, 캄보디아는 전체 외국 여자와의 혼인의 1.3%에 불과하나 151.0%라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나타냈다. 중국 여자와의 혼인은 2005년보다 6.0천 건 감소한 14.6천 건 혼인하여 큰 폭의 감소율(-29.2%)을 보여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 6) 韓國의 多文化家族支援法 - 外國人統合政策の 一環として, 白井 京, 外國の立法 238 (2008. 12), 153면, 國立國會圖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 7) 이러한 비교가 우리의 현실에 대해 갖는 의미는 한정적이다. 이들이 현재 처해 있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상황은 우리의 그것과 같지 않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문제점과 관련된 판결이나 이주정책을 들여다보아도 우리의 작금의 현실에 ‘들어맞는’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일본은 예로부터 엄격한 이주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문기술이 없는 노동자들 (unskilled workers)의 이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완고한’ 이주정책은 70년대 이래 여성이주희망자 중 대부분이 ‘엔터테인먼트’ 사증으로 입국하도록 유인을 제공하였고 이중 많은 여성이주자는 필리핀 국적 보유자였다.⁸⁾ 그런데 90년대 들어와서 배우자 비자가 엔터테인먼트 비자보다 많아졌다. 즉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가 대폭 증가하였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주된 관심사, 이들의 자녀양육상의 문제점 및 2세의 일본사회에의 동화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다.

일본에서도 국제결혼 초기 단계인 80년대 중반 외국으로 외국인 신부를 찾아 나섰다. 당시 주로 필리핀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⁹⁾ 하지만 한국과 중국, 베트남이 순차적으로 대상국가가 되었다.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일본은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동화’를 강조하였다. 특히 이런 관점에서 이주여성의 2세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일선에서 이들 2세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이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 결혼관에 관한 갈등, 일본 가족 전통과의 갈등 및 남성 배우자로부터의 불평등대우 문제를 주요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¹⁰⁾

일본에서의 국제이주여성의 인권에 관한 연구는 그들의 자녀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JFC 문제는 ‘이주여성의 통합문제’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한국이나 대만보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제를 일찍 체험하였기 때문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¹¹⁾

2) 상술한 다문화가족의 정치·사회적 통합은 독일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가령 2007년 8월 작센 주 올덴부르크 대학교 정치학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이

8) Ogaya, Chiho, International Marriage in Japan: Immigrant Women's Struggle and Children's Issues, in: 2007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쟁점과 전망 (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Issues and Prospects), 주최 및 주관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62-76면(특히 62면, 73면). 형식상 ‘직업예술인’일뿐 사실상 유흥업소에서 일하거나 성매매종사자로 전락하는 문제를 치호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9) Ogaya, 앞의 논문, 65면.

10) Ogaya, 앞의 논문, 72면. 특히 필리핀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Japanese-Filipino - Children (소위 JFC))은 일본인 생부가 출생 후에 인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일본 동경 지법(2005년 4월) 판결을 강조하고 있다.

11) Ogaya, 앞의 논문, 76면.

주자들을 정치적으로 통합 또는 동화시키는 것은 민주, 법치국가가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중의 하나이며, 국제이주자들 스스로 정치적, 사회적 참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¹²⁾ 「유럽경제공동체회원국 국민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률」(AufenthG/EWG)(2005년 1월 1일자 「국제이주법」(Zuwanderungsgesetz)에 의해 대체됨) 제7조,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률」(AuslG)(Gesetz über die Einreise und den Aufenthalt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2005년 1월 1일자 「외국인의 체류, 노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AufenthaltsG)에 의해 대체됨) 제17조 내지 제27조의 a(가족, 배우자, 자녀 등의 체류허가자에 관한 규정들임), 제29조, 제31조, 제35조는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¹³⁾

1998년 11월 독일 수상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국회연설에서 외국인이주자들에 대해 ‘손님으로 찾아온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독일국민의 일부가 된지 오래’라고 토로하면서 적극적 대처를 호소하였다.¹⁴⁾

이를 이어 받아 2001년 8월 독일 내무부장관 쉴리는 「국제이주법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입법목적은 취업이주의 완화, 이주민통합정책의 강화, 유럽연합회원국

12) Für demokratische Rechtsstaaten ist die politische Integration von Zuwanderinnen und Zuwanderern ein gesellschaftlich und politisch erwünschtes Ziel. Von der Bevölkerung mit Migrationshintergrund wird politische Partizipation und gesellschaftliches Engagement erwartet. Norbert Cyrus/Dieter Vogel, Förderung politischer Integration von Migrantinnen und Migranten in Sachsen. Begründungszusammenhänge und Handlungsmöglichkeit. Expertise für die Fraktion von Bündnis 90/DIE GRÜNEN im Sächsischen Landtag. Zusammenfassung (1)에서 인용함. 이 글은 http://www.politischebildung.uni-oldenburg.de/download/2007_Sachsen_Politische_Integration.pdf에서 볼 수 있다(2010년 5월 17일 최종방문).

13) 위에서 소개한 법률과 관련된 독일의 재판례를 인용한다. 독일 관할 재판부의 심리방법이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가령 VG Düsseldorf, Beschluss vom 30.12.2004 - 8 L 3457/04. 이것은 영국 국적자와의 혼인관계를 청산(이혼)한 후 체류허가를 신청한 이란여성의 요구를 기각한 사건이다. 관할 법원은 심리를 매우 꼼꼼하게 진행하였다. 먼저 「유럽경제공동체회원국 국민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률」(AufenthG/EWG) 제7조 및 제7조의 a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더 이상 동법 제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명시된 사람의 가족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률」(AuslG) 제19조 제1항 제1문 제1호의 요건(가족으로서가 아니라 독자적 체류권의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았다. 혼인 후 2년 이상 합법적으로 독일에 계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년 이상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이란여성의 논지를 전적으로 불확정적이고 실제적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gänzlich unbestimmt und unsubstantiiert). 또한 동법 동조 동문 제2호와 제2문 후단에 따른 현저한 곤란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다. 고향으로 추방될 경우 현저히 곤란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4) Die Regierungserklärung von Bundeskanzler Gerhard Schröder, in: Das Parlament Nr. 48 v. 20. 11. 1998, S. 8.

국민의 체류자격완화 등에 있었다.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해서도 「외국인의 체류, 노동 및 통합에 관한 법안」에서 체류목적 및 요건을 교육, 취업, 인도적 근거 및 가족동반이주 등을 중심으로 확대, 완화하였다.¹⁵⁾

위와 같은 외국인이주자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개방적인 수용 및 통합정책은 우리나라에서 국제이주여성을 둘러싼 법적 쟁점, 특히 자녀문제를 포함한 해결책을 강구함에 필요한 단초들을 제시해준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다문화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법률분쟁의 양상을 통해 살펴본다.

III. 다문화가정의 법률 분쟁의 일단면

법고를 LX(판례검색프로그램)에서 ‘다문화가정’ 내지 ‘다문화가족’을 검색어로 하여 조사하면 관련 판례가 하나도 검색되지 않는다. 법령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법원판결문검색시스템에서는 2008. 1.1.부터 2008.12.31.까지 선고된 판결 중 다문화 가정과 관련하여 총 2,520건의 판결이 검색가능하다고 한다. 그 중 서울가정법원이 1,978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¹⁶⁾ 법원판결문검색시스템에서만 관련 판례의 검색이 가능한 것은 민사나 형사와는 달리 가사사건의 경우 가사소송법 제10조¹⁷⁾에 의하여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게재해서는 아니되는 법적 제약으로 인해 법원 외부인에게 접근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범위를 조금 넓혀 보면 가사소송 사건(가사신청, 비송사건 등 제외) 중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사건의 비율(2008년 접수 기준)은 전체 약 9,000여 건 중 약 4,500여 건으로 약 50% 정도(본안소송 및 조정신청 사건 포함)이고 이러한 국제사법사건 중 재판상 이혼 사건은 약 4,000여 건(본안소송 및 조정신청 사건 포함)이다.¹⁸⁾

15) 이 법안에 대한 상제는 우선 Wollenschläger, Konzeption für eine Zu-/Einwanderungsgesetzgebung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ZRP 2001, 459.

16) 서울가정법원에 사건이 많은 이유는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의 주소나, 거소, 최후주소를 알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소가 모두 대법원 소재지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제기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문화가정 지원단체 상담실무자 교육(이하 상담실무자 교육으로 인용한다), 서울가정법원/법무부, 2009.6.19., 53면 이하.

17) 제10조 (보도금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에 의하여 그 본인임을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잡지·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보다 구체적인 통계를 보자면 서울가정법원 가사 5단독 재판부에 2009.2.20.~2009.6.10. 사이에 접수된 건수는 500건, 처리된 건수는 447건, 판결선고는 178건이었다.¹⁹⁾ 이 178건 중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건이 108건으로 전체선고 사건의 약 60%를 점한다. 사건유형으로는 이혼사건이 96건, 혼인무효 사건이 11건 등이다(단 혼인무효 사건 중 9건은 이혼으로 청구취지가 변경된 후 선고되었다). ‘이혼’사건이 대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위 108건 중 외국인이 원고인 사건은 21건에 불과하고, 외국인이 피고인 사건이 8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외국인이 원고인 사건 중 남자는 2명, 여자는 19명이고, 외국인이 피고인 사건 중 남자는 20명, 여자는 73명이다. 미성년의 자가 있어 친권 및 양육권을 구하는 경우는 그 중 3건에 불과했다. 미성년의 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이 여기에서도 드러난다.

소송이유는 남편의 가출·탄 살림 47%, 남편의 채무 24%, 무능력·폭행 19%, 기타 문화적 갈등 10%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이혼소송건수 대비 다문화가정 이혼소송비율은 2008년 29%, 2009년 32%, 2010년 1분기 4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여성 당사자의 대부분은 중국과 베트남 국적 보유자였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신속하고도 전방위적인 지원이 없으면 위와 같은 이혼추세는 계속될 것이고 많은 경우 2세의 문제아동화 현상과 결부하여 머지않아, 아마도 이미 오늘날,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이다.²⁰⁾ 즉 국제이주여성의 법적 문제는 그들의 자녀문제를 함께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해체될 경우 자녀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데 가정의 해체사유를 살펴본다면 좀 더 구체적인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아래 V. 참조).

국제결혼 및 국제이혼은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국제사법적 사건이 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준거법적 기초를 간략히 짚고 넘어간다.

18) 위 섭외사건에는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한국 국적의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모두 국제결혼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한국인과 결혼하였다가 이혼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이든, 결혼 전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이든 불문)하였다가 한국인과 결혼한 이후 이혼한 사건은 섭외사건으로 분류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전해주시신 서울가정법원 안중화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9) 위 상담실무자 교육, 54면.

20) ‘가정법원에서 이혼한 부모의 아이가 몇 년 뒤 소년범으로 법정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실무의 견해도 있다(보도기사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4079559(2010년 5월 17일 최종 방문) 참조).

IV. 국제사법상 이혼의 준거법

법원은 현재 국제이주여성이 청구한 이혼사건에 대해 한국법의 적용을 당연시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준거법 판단이 선행된 것이다.

1. 혼인의 효력과 이혼의 준거법의 통일

먼저 국제결혼한 배우자가 아직 한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동안에 이혼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우선적으로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가 문제될 경우 그 준거법의 결정에 관하여는 국제사법이 적용된다(국제사법 제1조). 이혼의 준거법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39조가 규정하고 있다. 동조 본문은 재차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준거법을 정하고 있는 동법 제37조를 준용한다. 말하자면 혼인의 효력과 이혼의 준거법을 같은 연결소에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공통된 연결소는 첫째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둘째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²¹⁾ 셋째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²²⁾의 법이다.

이와 같이 혼인의 효력과 이혼의 준거법을 통일시킨 이유는 혼인이 유효한 동안 부부가 부담하는 의무를 확정하는 문제와 그 의무의 위반시 부여되는 법률효과

-
- 2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호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정 2007. 12. 10.)에 따르면 상거소란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라고 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상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즉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사건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한 기간 및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참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그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등을 자료로 판단한다). 먼저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①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적이 없는 사람, ② 체류자격이 ‘거주’인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장기체류자), 그 배우자 및 미성년인 자녀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단, ②의 요건 해당자는 제외한다)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① 주한 외교사절, 주한 미군, 단기체류자 등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단서의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② 불법입국자 및 불법체류자가 그 예이다. 참고로 동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예규는 예규일 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 22) 위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호에 따르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국제신분행위의 준거법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장소가 신분행위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인지는 구체적 상황에 있어서 당사자의 체류기간, 체류목적, 가족관계, 근무관계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며, 그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 문제를 같은 맥락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데 있다. 가령 혼인이 유효한 동안 부부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존재하는데 이 부양의무를 상당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할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로 평가될 수 있다.²³⁾ 이때 이혼의 소를 제기한, 파탄에 책임 없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근거로 유책주의를 취할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범조항은 그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일응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파탄주의를 취할 경우 양 준거법을 반드시 통일시킬 필연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²⁴⁾ 혼인생활이 형해화되어 실질적으로 파탄에 빠진 경우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혼인의 효력의 준거법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경될 가능성도 크다. 부부가 항상 같은 국적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며, 항상 같은 곳에 거처를 두지도 않는다. 따라서 혼인의 효력과 이혼의 준거법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²⁵⁾

23) 가령 대판 1998. 4. 10., 96므1434(공98.5.15.[58],1356)(피고(남자배우자)의 축첩행위가 부당하게 동거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이다); 대판 1999.2.12, 97므612(공99.4.15.[80],661)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없거나 재혼한 부부간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평가 및 판단의 지도원리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 전처와 사별한 2남 4녀를 둔 53세의 남자가 42세의 독신녀(원고)와 재혼하여 18년간의 결혼생활을 거쳐 별거에 들어간 뒤 이혼의 소를 제기한 경우이다.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이었다.

24) 우선 MK/Winkler von Mohrenfels, Bd.10, 4. Aufl., 2006, 방주 34(독일민법시행법(EGBGB) : 이하 EGBGB로 인용한다. 우리의 국제사법에 대응하는 법률이다) 제17조).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판결들이 있다. 예컨대 대판 2004므1033(공2004.11.1.[213],1740); 대판 2006. 1. 13., 2004므1378(공2005.2.15.[244],239)(「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25) 가령 이혼청구 시점에 부부 모두 공통의 국적 또는 상거소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이말방이 국적 또는 상거소를 변경할 수도 있다. 특히 이혼의 준거법은 이혼청구시의 그것으로 확정되지만, 혼인의 효력의 준거법은 변경가능하다는 입장에 설 경우 이는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연결소의 판단시점에 대해 변경주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불변주의를 취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2. 이혼의 준거법규정의 독자성

그런데 위와 같은 준거법통일은 과거의 본국법주의(구 섭외사법 제18조²⁶⁾는 夫의 본국법에 연결하고 있었다)를 헌법상의 ‘동등대우원칙’을 존중하여 수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제사법 제39조가 제37조를 준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혼의 준거법규정의 독자적 성격을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혼준거법규정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이혼의 준거법을 혼인의 효력의 준거법과 가급적 일치시키는 입법은 국제가족관계에 관한 법리를 혼인과 이혼 모두에 대해 연속적, 통일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실제로 국제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제기하는 이혼의 소는 이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법, 즉 (대부분의 경우) 한국법이 적용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혼의 실질적,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한국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의 방식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제17조에 따라 행위의 준거법, 즉 이혼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볼 것이다. 협의이혼방식에 대해서도 한국법이 적용된다.²⁷⁾ 그 밖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와 관련하여 민법 제840조가 검토되어야 한다. 국제이주여성의 경우 판례를 검토하면 동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및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사유가 특히 문제되고 있다. 상세한 것은 이하 V. 부분에서 본다.

26)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夫의 본국법에 의한다. 그러나 법원은 그 원인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혼이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혼의 신고를 하지 못한다. 참고로 구 섭외사법은 법률제6465호 전면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제사법」으로 대체되었다(제정 2007년 4월 17일).

27) 참고로 이혼신고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다.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성명 및 국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동법 제75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등본을 첨부하면 민법 제836조 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76조).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제78조, 제58조). 이는 보고적 신고이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5조).

3. 내국인조항

나아가 국제사법 제39조 단서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설사 부부가 다른 국적을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른바 내국인조항).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협의이혼이 인정되는바 협의이혼신고를 제출하여 처리되는 곳은 결국 우리나라인 점도 고려하였을 것이거니와 이혼의 자유를 사실상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법의 적용범위를 우리의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확장한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동조 ‘단서’의 입법태도가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된 사회에서 여전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²⁸⁾

이상에서 준거법 결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히 검토하였다. 배우자가 여전히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이혼에 관한 실질사법인 ‘민법상’의 이혼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혼의 실질적 사유에 관해 논하기로 한다.

V. 국제결혼의 파탄사유와 위장결혼문제

1. 민법 제840조상의 이혼사유

1) 서

결혼생활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그 실체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국제결혼의 경우는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때 재판부가 당사자들의 주장만을 듣고서는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기에는 그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문제점으로 인한 많은 난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가사사건에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가사조사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가사조사명령에 의해 가사조사관은 현장을 방문하여 당사자들과 주변인들에 대한 탐문을 수행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사건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복지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가사조사관의 조사에 회부하여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가령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친권자

28) 이와 관련된 국제사법적 논의는 더 이상 상론하지 않는다. 본 논문의 주제와 멀어지기 때문이다.

및 양육자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양육환경,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 여부 및 방법, 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관한 부모교육 등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조사하거나 수행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가사조사관의 조사 중에 심리검사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상당한 참고가 되고 있다.

2) 다문화가정의 파탄사유

법원은 국제결혼의 파탄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의 특징을 감안하고자 한다. 즉 애초부터 언어소통의 난점이나 문화의 차이가 있음을 알고 결혼하였기 때문에 부부가 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행하였는가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심리한다. 특히 파탄의 귀책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화적 격차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상술한 바와 같이 판례는 아직 유책주의를 원칙적으로 하면서 단 상대방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 또는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²⁹⁾나 쌍방 대등한 유책정도의 경우³⁰⁾에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가령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고,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한국적 배우자, 또는 그 가족들이 외국인 배우자를 구박한다거나 무시하거나 폭행한 것이 파탄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그 한국적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하는 반면, 외국인 배우자가 종전 자신이 생활관행에 따라 부부생활을 유지하려고만 할 뿐, 전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별 다른 적응의 노력없이 무단가출하여 발생한 파탄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본다.³¹⁾

외국적 배우자가 한국말을 빨리 배우지 못한다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핑계를 들어 뜬금없이 가출을 반복하며 부양의무를 도외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

29) 대판 1998.4.10., 96므1434(공98.5.15.[58],1356); 대판 1999.2.12., 97므612(공99.4.15.[80], 661) 참조.

30) 대판 1991.7.9., 90므1067(공1991.9.1.(903),2158)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인용되어야 한다」).

31) 서울가정법원 2008드단112202 이혼.(「...오히려 비록 원·피고 사이에 일부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아내)는 입국한 때로부터 불과 5개월 남짓이 경과한 무렵에 가출하였고, 이에 따라 동거한 기간도 위 기간에 불과한 점, 원고는 가사조사 당시 피고가 술을 먹고 원고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원고는 가출 이후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한 부탁을 위하여서만 1년에 1회 정도 피고를 만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무단가출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³²⁾ 악의의 유기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제840조 제2호). 단 상대방이 집을 나갈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나 가정불화를 피하기 위해 일시 별거한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대전고등법원 2008.1.23. 선고 2007노425살인 판결은 국제결혼정보업체에 1,000만원을 지급하고 19세의 베트남 여인 후안 마이와 결혼한 후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베트남 신부가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신부를 살해한 남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공인, 확정된 사건인데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고 한국인 스스로에게 자성을 권유하는 인상적인 판결이다. 한국 국적 배우자의 음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외국인 여자 배우자가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³³⁾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는 요건은 거의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상술한 통계에서 보았듯이 2008년 이혼한 한국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평균 동거기간이 2.7년에 불과했다.

그 밖에 실질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사유가 제840조 제6호의 사유이다. 여기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는 한국적 배우자가 불치의 정신병자임을 모른 채 입국했던 경우,³⁴⁾ 극단적인 의처 내지 의부증세가 지속되는 경우, 기타 외국에서 결혼식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혼인신고를 하여 입국 비자를 받도록 노력하였으나 배우자가 여러 가지 사유(비자불허, 외국 현지에서

32) 대판 1998.4.10., 96므1434(공98.5.15.[58],1356); 대판 1999.2.12., 97므612(공99.4.15.[80], 661) 참조.

33)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26162 이혼. 법원은 이것을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보았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원고와 한국적 피고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살다가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역시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이혼사유로 인정한 예로 서울가정법원 2008드단112882 이혼 참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 주된 이혼사유라면 제3호의 이혼사유를 근거로 해도 무방할 것이다.

34) 중개업체의 정보은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다. 필리핀 여성이 현지에서 결혼 후 입국하였다가 결혼생활을 시작하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지적 장애를 알게 되어 협의이혼을 한 사건이 있었다(소라미, 공익인권법센터 발표자료 5면). 나아가 중개업체의 허위 내지 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도 존재한다. 더구나 수십 내지 수백 대 일의 단채면접을 통해 외국인신부를 선택하는 관행은 신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알아가기」과정 없이 맺어지는 부부의 연이 과연 얼마나 같 것인지도 의문이거나 그 과정에서 인격모독 내지 인신매매가 조직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선진국의 문턱에 선 한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처신을 통해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의 출국불허, 연락두절 등)로 입국하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³⁵⁾

이혼 당사자 사이나 그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방지 내지 대립이 생긴 경우는 본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³⁶⁾

2. 위장결혼의 문제

최근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위장혼인임이 밝혀지면 민법 제815조 제1호(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의해 그 혼인은 무효가 된다. 또한 그 혼인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다(제816조 제3호).

또한 허위 초청 또는 위장결혼으로 혼인이 무효가 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의해 강제퇴거당할 수 있다.³⁷⁾ 동 조항은 동법 제11조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 제1항 제3호와 제4호는 상당한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³⁸⁾ ‘우려’ 및 ‘상당한

35)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외국인의 경우 국민의 배우자자격(F-2)으로 입국하게 되는데, 이때 법무부 지침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결혼사증을 발급받기 전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를 등록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후 재외공관에서 인터뷰 결과 위장결혼 등의 이유로 결혼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한국적 배우자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국 새로운 배우자를 구하려고 하여도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이혼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36) 대판 1965.9.25, 65므16(집13(2)민,181) 「...민법에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정한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이혼당사자 사이어나 그와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균열 내지 대립이 생기었다는 것을 동조 제6호에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는 만큼 원심이 청구인의 본건 이혼청구를 피청구인과 청구인 또는 그의 어머니 갑 및 시누이들 사이에 심한 감정의 대립이 생기었다는 사실을 인정 하면서 그것만으로는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한 조치였다...」.

37)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는 다음을 내용으로 한다.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 2.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동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2.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38)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연려가 있

이유'와 같은 전형적인 불확정법률개념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이 유일한 법효과는 아니지만 대체로 퇴거를 명하는 것이 현재의 실무상의 추세인 듯하다. 그러나 실무상 위장결혼이라는 증거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실제로는 위장결혼하여 입국한 후 이혼을 청구하는 예가 많다. 그 이유는 국제이혼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체류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로 동조 제2항 제3호가 「제1호나 제2호39)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밑줄은 필자가 가함).

원고(중화인민공화국, 여)가 위 조정 당시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성립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나, 조정 내용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었으므로, 위 조정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존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사소송법 제461조(제451조 제2항)에 따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존재심의 소를 부적법각하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사실을 인용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에 피고의 유책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불이익을 입고 있으므로 항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판결문의 주문은 이유에서 독립된 것이므로 결론만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가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한 부분이 없고 따라서 불복할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도 있다.⁴⁰⁾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밑줄은 필자가 가함).

39) 국적법 제6조 (간이귀화 요건)

②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40) 위 상담실무자교육, 58-9면 참조.

3. 국적법개정안과 이중국적문제

1) 한편 위장결혼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혼 전의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했던 사람은 무국적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말하자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내려도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중전 국적보유국이 자발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던 자에게 국적을 회복시켜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이중국적문제에 대하여 유연한 태도로 임한다면 개선될 여지가 크다.

지난 해 11월 13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법개정안에 따르면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볼 수 있다. 몇 가지만 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22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포기증명서 대신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한국인과 결혼해 이민 온 외국인이나 외국인 고급인력, 고령의 재외동포, 해외입양되었다가 한국국적을 회복한 사람, 국내에서 태어나 20년 이상 살아 온 화교 등도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¹⁾ 그러나 서약을 위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한국 국적이 상실될 수 있으며, 복수국적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정하였다.

이로써 한국적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을 하여 이주할 때 불행사서약을 하면 중전의 외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외국인 배우자가 위장결혼으로 적발될 경우 국적을 취소당하는⁴²⁾ 동시에 중전 국적 보유국으로 강제퇴거를 명령받을 경우 그 명령의 현실적인 관철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문화가족이 우리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요즘,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유연한 국적제도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41) 참고로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우리 국적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기한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0조).

42) 국적법 제21조(허가 등의 취소)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이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즈음 결혼이나 근로의 목적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는 사람들이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목격된다. 노동의 전단계로서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국제결혼 후 근로전선에 뛰어 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모든 사람은 생존의 수단으로 노동을 하여야 하므로 이주의 순서나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처음부터 위장결혼으로 입국 후 가정은 방기한 채 고용시장에 뛰어드는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된다.

위장결혼을 예방하고 국내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적발시 위법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위화효과를 노리는 방법과 일반적으로 모든 이주 여성의 체류허가 요건을 강화하여 일반적으로 예방효과를 노리는 수단이 있을 수 있겠다. 전자를 선택할 경우 그 적발을 위한 경찰력 내지 행정력의 대대적인 투입과 지속적인 단속을 위한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며 적발자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면 할수록 단속효과는 커질 것이다. 후자의 방법으로 갈 경우 모든 이주여성을 일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관련된 여성 모두에게 불편함을 끼치더라도 보다 적은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력의 총체와 그 비용의 크기를 그로 인한 달성효과 내지 이익과 비교하여 사회경제적 효율성이 큰 방법을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적발건수가 감소하면 할수록, 즉 이주방법이 합법화 되면 될수록, 앞에 언급한 비용은 저감될 것이다. 동시에 단속과 통제에 있어서 외국인이주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절한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법 집행에 있어서 내, 외국인의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하에서는 국제결혼이 해소되면 발생하는 효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VI. 국제이혼의 실질적 효과

이혼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혼인이 해소되고, 일체의 혼인을 전제로 했던 권리의무가 소멸하며, 인척관계도 소멸하여, 재혼이 가능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친자관계에 관한 효과와 재산상의 효과로 대별하여 살펴본다.

1. 친자관계에 관한 효과

1) 이혼의 경우 다투어지는 문제 중 하나는 배우자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할 것

인가이다. 친권자와 친권의 범위에 관한 결정은 친자간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친자간의 법률관계가 문제로 부각된 계기를 이혼이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혼의 준거법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준거법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사법 제45조가 그것이다(독일 EGBGB 제21조도 동일한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동조에 따르면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 그 법에 의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국제이주여성의 경우 출산을 하였다면 대체로 한국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자의 상거소지가 한국이라면 국내법에 따라 자의 친권자를 결정하게 된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동조 제6항). 친권자의 결정과 변경은 조정을 거쳐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마류 가사비송사건). 혼외자에 대해서도 국제사법 제45조에 따라 같은 법리로 해결한다.⁴³⁾

다문화가정이 이혼으로 해소되면 외국국적 배우자는 한국어 미숙, 한국사회 적응미숙, 경제적 능력 결핍 등의 이유로 친권자로 지정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외국국적 부모와의 연결고리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부모 모두와의 정서적 유대 하에서 보다 원만한 인격의 형성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혼부모의 감정대립의 격화, 자녀의 정신적 방황의 심화 등의 부정적 측면들이 나타난다면 또 다른 대처가 유의미할 것이다. 즉 다문화가정이 이혼으로 해소된 후 그 자녀들이 이혼 후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지는지에 대한 사회학적, 심리학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해법이 나올 것이다.⁴⁴⁾

2) 국제이주여성의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해 타방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43) Erman/G.Hohloch, 11. Aufl., 2004, 방주 2(EGBGB 제21조). 「미성년자보호영역에서의 감독관청의 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조화시키고 혼증자와 혼외자의 친자관계문제를 통일적이고도 단순하게 해결하는 것이 입법목적이라고 한다. 참고로 구 독일 EGBGB는 제19조와 제20조에서 혼증자와 혼외자에 대해 각각 다른 규정을 두고 있었다.

44) 미국 여러 주에서 시행 중인 공동친권제도(joint custody)도 고려할 만하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에서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런지는 의문이다. 우선 Schwarz/Gödde, Gemeinsame elterliche Sorge nach Trennung und Scheidung in der internationalen Perspektive, FPR 2005, 98.

가능성이 클 것이다.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정(편모가정포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현격하게 개선되고 물질적, 정신적 원조가 확보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에 자가보다 잘 적응하기 위해 한국적 배우자가 친권뿐만 아니라 양육권까지 가지는 것이 자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도 부모로서의 기타 권리,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다를 경우, 협의되거나 법원에 의해 결정된 양육에 관한 사항에 의해 친권이 제한될 수 있다.

국제이주여성의 경우 극단적인 사례이겠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종의 씨뱀이 역할만을 한 채 축출되는 경우(자는 한국적 배우자 측에서 성장)도 있는데, 이는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의 반인권적 상업주의에 의해 배우자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나라로 결혼이주하는 까닭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⁴⁵⁾ 이 경우에도 다문화주의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작금의 현실에서는 국제이주여성이 양육권을 인정받기는 곤란해 보인다. 하지만 자의 복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보다 성숙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3) 위 2)에서 보았듯이 국제결혼이 파탄되어 이혼할 경우 한국적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되기 쉬울 것이다. 언어적, 경제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한국사회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인정하기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외국인배우자도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것이지만 면접과정에서 자녀들이 ‘한국말을 못하여 창피하다’,⁴⁶⁾ ‘나는 왜 이런 피부색으로 태어났는가’와 같은 원망어린 기분을 표출하며 통명스럽게 대한다면 회를 거듭할수록 면접교섭이 점점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같은 한국적 부부들이 이혼했을 경우의 면접교섭의 합리적 운영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은 많은 예가 보여준다. 국제

45) 소라미,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관련 법적 쟁점”, 2009년 10월 14일, NGO와 법의 지배, 강연문 5면.

46) 보건복지부 2005년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집단따돌림을 받는 이유로서 ‘엄마가 외국인이라서’가 34.7%, ‘의사소통이 안되어서’가 20.7%로 전체 원인 중 55.4%를 차지하고 있다. 김재련,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가족법연구**, 제22권 제1호, 2008, 115-6면(“국제결혼 부부들의 경우 부모의 이중 언어 사용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언어습득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국제결혼 자녀들이 발달성 언어장애와 말더듬, 심한 경우 행동장애까지 유발되어 학습부진을 초래하기도 한다...다문화주의를 포용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차별’ 또는 ‘배제’ 때문에 아동들이 조기에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다문화주의의 현주소라고 생각된다.

결혼이 해소되었을 경우 문화적 차이, 피부색의 차이 등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습득 노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한국적 배우자의 타문화에 대한 배려와 노력이 보다 요망된다고 생각된다.

2. 재산상의 효과

1) 부부 간의 재산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국제사법 제38조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준거법을 준용하고 있다(동조 제1항). 그러한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자유를 당사자들에게 부여하여 그들이 합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선택의 범위는 부부 중 일방이 국적을 가지는 법, 부부 중 일방의 상거소지법, 부동산에 관한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이다.

부부재산계약에 대해서도 동조가 적용되지만(제4항), 국제이주여성의 경우 적어도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⁴⁷⁾ 경제적으로 빈한한 가정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국제결혼의 실상이 변화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한국에서는 이혼 시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 즉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는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⁴⁸⁾로서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한다.

민법 제839조의 2는 협의상 이혼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이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고 있다(제843조).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판례는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⁴⁹⁾ 결국 중요한 것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실제

47) 물론 부부재산계약이 혼인 전에 체결된 경우 혼인의 재산적 효과에 관하여 이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만(민법 제829조), 이혼시에 대비하여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러한 계약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48) 현재결 1997.10.30., 96헌바14(판례집 9-2, 454, 464) 참조.

를 밝히는 것인데, 국제이주여성이 한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아직 언어적 미숙함,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전이기에, 국제결혼가정이 대체로 빈한한 경제적 사정에 처해 있음을 차치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타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이 또한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⁵⁰⁾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많은 이주여성들이 농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써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장애 때문에 모든 취득재산을 타방 배우자의 명의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정도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이주여성의 경우 현 단계에서 실제 예를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판례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실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의사표시로 해석하여, 그 후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혼인관계가 존속하든가 아니면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그 조건은 불성취된 것으로 보아 그 협의의 효력을 부인한다.⁵¹⁾

2)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이 별개의 제도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이 위자료를 포함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다룬 사건으로,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전자는 가사소송사건이고, 후자는 가사비송사건이다. 제도목적도 다르고 소멸시효도 다르다(제839조의 2 제3항 참조). 따라서 양자는 별개의 제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당사자 간에 협의이혼시 증여합의가 있을 경우 여기에 일종의 위자료로

49) 대판 1995.3.28., 94므1584(공1995상, 1752)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50) 대결 1993.5.11., 93스6(공1993, 1400).

51) 대판 1995.10.12., 95다23156(공1995하, 3735).

서의 성격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면 재산분할협의 속에 위자료가 포함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의사해석의 결과로 볼 것이지, 이로써 양제도의 독립적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⁵²⁾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다문화가정의 이혼에도 다르지 않게 적용될 것이다.

3. 사실혼의 해소

1) 국제이주여성 중 상당수는 취업목적으로 입국하여 사실혼⁵³⁾ 관계에 있거나 이혼 후 재혼하기 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타문화사회에서 홀로 생활하는 여성의 경우 삶의 반려자가 보다 필요할 것인데 최근 한국사회의 경향에서 알 수 있듯이 혼인을 기피하고 동거를 원하는 한국적 남성과 사실상 사실혼 관계로 이어지기 쉽다. 물론 이주여성과 동일한 국적의 남성과도 이러한 관계는 있을 수 있다. 사실혼의 해소에도 이혼의 준거법을 광범위하게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⁵⁴⁾

아직 국제이주여성과 관련하여 사실혼에 관한 분쟁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문제될 경우 사실혼에 관하여 형성된 사법상의 법리에 따를 것이지만 국제이주자와 한국적 배우자의 사실혼 및 그 해소의 경우 특이한 점은 없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2) 대판 2001.5.8., 2000다58804(공2001하, 1344); 대판 2005.1.28., 2004다58963(공2005.3.15. (222),398).

53) 사실혼 일반에 대해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2008, 242면 이하; 이경희, **가족법**, 전정판, 2008, 143면 이하. 과거에는 사실혼을 혼인예약의 문제(따라서 부당파기시 채무불이행책임을 짐)로 이해하였으나(朝高判 昭和 11(1936), 2.26, 민집 22권 21면; 대판 1960.8.18., 4292민상995, 집 8권 123면) 오늘날 준혼관계로 파악하여 그 부당한 파기의 경우 불법행위로 처리하고 있다(통설, 판례).

54) 위 IV. 참조. 사실혼에 대해서도 혼인의 준거법인 국제사법 제36조와 제37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창선, 앞의 책, 345면. 예컨대 춘천지법 2002드단636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판결은 판결 선고 당시 만 30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여성(당시 중국교포로서 불법체류 중이었다)이 한국적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 내지 양육비청구 사건에서, 원·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지만 피고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음은 이유로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의 유추적용에 기해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였다. 동 판결은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인용하였으나 나머지는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청구 내지 양육비청구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원고가 국내에 불법체류 중임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2) LX판례검색프로그램이나 로앤비에서 사실혼&외국인을 검색어로 조사를 하면 1개의 판결만을 찾아볼 수 있다. 판시내용을 보면, 원고와 중화민국의 국적을 가진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그 사실혼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고,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⁵⁵⁾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⁵⁶⁾

참고로 역시 구 섭외사법이 적용되던 때인 1985년의 이혼청구사건을 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모두 중화민국의 국적 보유자로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생활했었다. 청구인은 이혼심판청구를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한바 이는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국제사법적 사건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준거법으로 당시 구 섭외사법 제18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속하는 외국인 사이의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夫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이 사건에서의 피청구인인 夫가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므로 중화민국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위 법조 단서에 의하면 법원은 그 원인된 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혼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혼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혼원인에 대하여는 중화민국법과 우리나라 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혼청구원인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하반신 불구자로서 처자를 악의로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6년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슬하에 3남매를 두었던 바, 1973년경부터 피청구인이 심한 신경통으로 하반신이 보행불능의 상태로 되면서 처자식을 부양할 능력을 잃어 할 수 없이 1977년경부터 가족과 떨어져 홀로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되었으나, 위 인정정도를 넘어 피청구인이 고의로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하였다는 증인 청구외인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후, 피청구인이 하반신 불구가 된 사실은 중화민국 민법 제1052조 제7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우리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실

55) 사무관리,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

56) 대판 1994.11.4., 94므1133(공1994.12.15.(982),3273).

이 동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도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청구를 기각하였다.

양 당사자가 1976.9.13.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사실혼의 해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이나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중화민국법과 우리나라법의 중첩적 적용을 인정할 점에서 특이하여 소개하였다.

3) 사실혼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민법에 없다. 가사소송법(제2조 제1항 나류 사건 제1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 제72조⁵⁷⁾에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학설과 판례는 사실혼을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해왔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혼 부부의 공동생활에 준하는 실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률혼이 합의에 의해 해소될 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듯이 사실혼이 협의에 의해 해소될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된다.⁵⁸⁾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일방 당사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문화가정에서 일방 당사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 타방 당사자는 사실혼을 해소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해소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혼에 준하여 생각할 수 있다. 즉 폭행,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은 정당한 사실혼해소 사유이다. 그러나 임신불능 사실만으로는 정당화사유가 될 수 없다.⁵⁹⁾

한편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⁶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동거생활의 기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⁶¹⁾

57)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인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판결에 의한 혼인신고를 창설적 신고로 볼 경우 혼인신고를 할 때 비로소 법률혼이 성립하게 된다. 판례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1973.1.16., 72므25(집21(1)민,009)).

58) 한편 사실혼이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판 2006.3.24., 2005두15595(공2006.5.1.(249),745).

59) 대판 1960.8.18., 59다995(집8민,123)(사실혼을 혼인계약으로 보던 시대의 판결이지만 오늘날에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60) 대판 1989.2.14., 88므146(공1989.4.1.(845),425).

61) 대판 1998.8.21., 97므544(공98.9.15.[66],2312).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자의 양육에 대해서는 민법 제837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육에 관한 제반사항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⁶²⁾ 자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와 법률혼이 해소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할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혼의 해소에 적용되는 법리는 국제이주여성이 사실혼관계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타당할 것이다.⁶³⁾

VII. 결 론

1) 이상에서 위장결혼 및 이중국적 문제 등을 포함하여 국제이주여성의 혼인이 해소된 경우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국제사법적 관점과 실질사법적 관점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국제결혼(및 이혼)의 증가는 이질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배우자들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이어졌다. 다양한 문화가 한국에서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복합문화로 태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웃사촌의 범위를 전세계인으로 늘려가는 셈이다. 2006년에 이미 126개국 이상의 국가와 국제결혼이 있었다. 적어도 126개국과는 ‘심정적’ 이웃관계를 맺은 셈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차치하더라도 국제이주여성은 이미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62) 그러나 판례는 이에 반대한다. 대판 1979.5.8., 79므3(집27(2)행018,공197911993); 청주지법 1984.4.26., 84드70(하집1984(2),729). 김주수/김상용, 앞의 책, 260-3면.

63) 부산지법 2004.9.17., 2003드단10212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중국교포 여성이 한국적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피고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아직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혼에 이른 남녀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타방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별 다른 근거도 없이 원고의 아랫배 부분에 난 오른쪽 난소제거수술로 인한 흉터를 낙태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오단하고 원고에게 다른 자녀가 있거나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오해와 의심에 사로잡혀 국제결혼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여 결국 원고로 하여금 결혼을 단념하게 만들었다. 이미 대판 1998.12.8., 98므961(공1999상, 127) 참조.

수 있다.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의견이나 신념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하라는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오늘날과 같은 ‘한국사회의 다문화성’에 비추어 볼 때 세계인권선언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인권선언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언이 형식적인 紙上의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속의 실천이 되도록 소통과 교감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2) 상술한 통계에서 보았듯이 국제결혼보다 국제이혼의 증가율이 높다. 이는 곧 다문화가정 중 편부·모가정이 늘어간다는 의미이다. 친권과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등을 합리적으로 조율함으로써 어느 정도 자녀의 복리를 도모할 수는 있겠으나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 충격은 피할 수 없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자녀가 문제청소년으로 자라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⁶⁴⁾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이 한국사회에 동화되어 대한민국의 동량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⁶⁵⁾

다문화가족에 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고 또 수행되고 있다. 그 연구들 중 상당부분은 특히 이주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족(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의 강화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의식의 개선 및 한국의 관련 법제도의 정비 내지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⁶⁶⁾

법정책적 관점에서 국제이주여성에 관한 보호는 최근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아 보인다. 제도개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64) 교과부 2008년 통계의 의하면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는 약 5만 명 정도이며 초중고에 다니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2008년 4월 당시 18,778명으로 2006년 4월 대비 약 10,780명 증가하였다고 한다. 한국염, “다문화시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2009년 10월 6일 제3회 공익인권포럼(혼인이주여성의 법적 문제) 발표문, 12면. 현재는 약 58,000명의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있고 그 중 약 20,000명이 재학 중이라고 한다. 위 발표내용에서 인용한다.

65)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는 법(다문화가족지원법을 말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국적으로 80여 곳 설치되어 있다)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이 그것이다.

66) 박정혜, “결혼이주여성의 법적지위보장방안의 모색”, 한국염, 앞의 발표문; 김현미,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상상력과 한계”, YMCA 워크숍(아시아 역사 주체로서의 이주여성), 2008년 10월 10일 발표문. 여성가족부, 아시아여성이주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2007 등.

3) 그리고 국제결혼 및 국제이혼의 통계수치는 수치 이상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웃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의 실질적 파탄은 일반적인 이혼과는 달리 문화적 괴리감에서 비롯되는 면이 크다. 파탄사유의 심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는 것은 타당한 태도라고 생각된다. 또한 다문화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과 그 이혼가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들이 원하던 나라, 살고 싶은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이러한 자긍심에 부응하는 책임도 다해야 할 것이다.

4)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사회적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유연하고 진취적인 마음자세가 중요하다. 열린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다원적, 개방적 민주주의의 확립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제결혼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여건을 개선, 완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망을 항구적, 포괄적으로 구축하여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외무부, 노동부, 여성부 및 각종 이주여성쉼터와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간의 협조를 통한 유기적이고도 효율적인 통합 원조가 가능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

투고일 2010. 5. 17

심사완료일 2010. 6. 7

게재확정일 2010. 6. 14

참고문헌

-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제8판, 2006.
- 이경희, **가족법**, 전정판, 2008.
- 김증한, “한국 민법학 30년의 회고”, **서울대 법학**, 제19권 제1호, 1978.8.
- 석광현, **국제사법해설**(2판), 2003.
- 신창선, **국제사법**, 제6판, 2007.
- 이호정, **국제사법**, 1981.
- 지원림, **민법강의**, 제6판, 2007.
- Münchener Kommentar*, Bd.10, 4. Aufl., 2006.
- Hans Stoll, *Internationales Privatrecht*, 1976.
- Keigel/Schurig, *Internationales Privatrecht*, 8. Aufl., 2000.
- Hoffmann, *Internationales Privatrecht*, 7. Aufl.
- Erman Kommentar*, 11. Aufl., 2004.
- Kropholler, *Internationales Privatrecht*, 4. Aufl., 2001.
- v. Bar/Mankowski,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d. I (Allgemeine Lehre), 2. Aufl., 2003.
- Norbert Cyrus/Dieter Vogel, Förderung politischer Integration von Migrantinnen und Migranten in Sachsen. Begründungszusammenhänge und Handlungsmöglichkeit. Expertise für die Fraktion von Bündnis 90/DIE GRÜNEN im Sächsischen Landtag (2007.8.31).
- Schwarz/Gödde, Gemeinsame elterliche Sorge nach Trennung und Scheidung in der internationalen Perspektive, *FPR* 2005, 98.
- Ogaya, Chiho, International Marriage in Japan: Immigrant Women’s Struggle and Children’s Issues, in: 2007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쟁점과 전망(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Issues and Prospects), 주최 및 주관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 Wollenschläger, Konzeption für eine Zu-/Einwanderungsgesetzgebung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ZRP* 2001, 459.
- 白井 京, 韓國の 多文化家族支援法 - 外國人統合政策の 一環として, *外國の立法* 238(2008.12), 國立國會圖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 박정해, “결혼이주여성의 법적지위보장방안의 모색”, 2009년 10월 6일 제3회 공익인권포럼(혼인이주여성의 법적 문제) 발표문.
- 한국염, “다문화시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2009년 10월 6일 제3회 공익인권포럼

(혼인이주여성의 법적 문제) 발표문.

김재련,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가족법연구**, 제22권 제1호, 2008.

김현미,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상상력과 한계”, YMCA 위크숍 (아시아 역사 주체로서의 이주여성), 2008년 10월 10일 발표문.

소라미,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관련 법적 쟁점”, 2009년 10월 14일, NGO와 법의 지배, 강연문.

소라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 신분보장을 위한 법·제도 검토”(지정토론회 요지), **저스티스**, 96호, 2007.

여성가족부, 아시아여성이주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2007.

보건복지부, 2005년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

서울가정법원/법무부, 다문화가정 지원단체 상담실무자 교육, 2009.6.19.

통계청, 「2008년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2005년 혼인, 이혼통계」(2006.3.30 발표).

통계청, 「2006년 혼인통계결과」(2007.3. 발표).

보건복지부, 「2005년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

<Abstract>

Über die rechtliche Probleme um die Einwanderinnen durch Internationale Eheschliessung

Bong-Kyung Choi*

Heutzutage wandern viele von einem Land zum andern, zumal zum Zweck der Arbeitssuche, wobei alle Mittel zurecht zu sein scheinen. Dieser Aufsatz handelt von den Problemen, die vor allem mit Einwanderinnen durch internationale Eheschliessung im Zusammenhang stehen und derzeit auf allen Kontinenten zu Tage treten.

Zuerst analysiert er das statistische Faktum über internationale Eheschliessung der Koreaner und der Ausländer (II.) und unternimmt eine, wenn auch kurz, vergleichende Untersuchung mit Japan, Deutschland. Dann geht er weiter in die rechtliche Streitigkeiten ein, die zwischen ihnen häufig vorkommen (III.).

Danach werden die Anwendungsnormen untersucht, die bei der Ehescheidung der internationalen Partner in die Betracht kommen (IV.). Weiter werden die materielle Zerrütungsgründe bei der internationalen Ehe näher behandelt (V.) und die materiellrechtliche Rechtsfolge der Scheidung der internationalen Ehe wird unter die Lupe genommen (VI.).

Am Ende fügt der Verfasser das Fazit hinzu (VII.)

Key words: Multikulturelle Familie, Einwanderinnen, Internationale Eheschliessung, Internationale Scheidung, Scheidungsgründe bei der internationalen Scheidung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